

종합 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북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

2019. 6. .

3. 처분요구일람표

1. 이사장 겸직 승인 미이행 (시정 및 통보)	4
2. 총인건비 인상을 위반 등 인건비 인상 부적정 (시정)	9
2-1. 인건비 인상 부당 처리 (징계)	13
3. 정원 및 보수협의 부적정 (주의)	16
3-1. 정원 및 보수협의 부당 처리 (징계)	19
4. ㉠㉠직 ✓급감사 운영 부적정 (개선)	21
5. ㉠㉠직 ✓급 승진 부적정 (주의)	23
5-1. ㉠㉠직 ✓급 승진 부당 처리 (징계)	25
6. 시험위원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주의)	27
7. 채용서류 반환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미이행 (주의)	30
8. 피복비 지급 부적정 (주의)	33
9. 성과급 지급 부적정 (주의)	37
9-1. 세출예산 집행 부당처리 (징계)	39
10. 보증료 환급업무 처리 지연 (주의 및 통보, 기관경고)	41
11. 시군 및 금융기관 특례보증배수 운영 부적정 (주의 및 통보)	43
12.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 및 규정 불합리 (통보)	46
13.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주의)	49
14.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50

경 상 북 도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이사장 겸직 승인 미이행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개 모집 공고」(경북신용보증재단 공고 제2017-14호, 2017. 12. 7.) 8.기타항목에 따르면 이사장은 상근직으로 겸직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위 관서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르면 복무규정은 비상근무직원을 제외한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직원은 직장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재단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 이사장 역시 복무규정에 따른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이사장 본인의 겸직에 관해서 그 허가 주체는 성과계약서 등 채용부속서류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와 귀 재단 「복무규정」 등에 따라 재단 이사장으로 임용되는 자는 임용되는 시점부터는 원칙적으로 재단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 겸직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허가 주체를 임용권자로 하는 성과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당초 채용공고조건 및 복무규정과 다르게 성과계약서 체결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8. 3.(날짜미상) 경상북도지사와 성과계약서를 작성 및 체결하면서 위 채용공고조건과 복무규정과는 다르게 영리목적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기재하였다.

*성과계약서 제5조 제1항 : 이사장은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시지원서 경력사항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력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위 공모에 응시하면서 이사장은 상근직으로 겸직이 불가한데도 2018. 1. 29. 위 관서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까지 사임하지 않고 취임 이후에도 □□□□□ □ □□□ □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결과 귀 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2019. 4. 4. 감사일 현재까지도 위 □□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겸직승인을 받지 않은 채 겸직하고 있다.

[표] 이사장 재임 기간 중 겸직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이사장 임명일 (임명기간)	타 업무 종사내역		
		취임기관	재임기간	직 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3. 재단 이사장 최종 후보자로 확정된 후 다시 다른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

위 관서 이사장은 2018. 1. 9. 개최된 재단 이사회에서 재단 이사장 최종 후보자로 확정되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 통보(2018. 1. 29.) 받기 전인 같은 해 1. 26.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전 겸직승인을 받는 등의 아무런 절차 없이 위 [표]와 같이 2013. 6. 7.부터 2017. 1. 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하던 ■■■■■ ■■■■■■■■■■■■■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고, 2018. 1. 29. 위 재 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겸직승인을 받지 않았다.

더욱이 위 재단 이사장은 2018. 6. 4. ■■■광역시 ■■■구에 소재한 **에서 개최된 ■■■■■ ■■■■■■■■■■■■■ ➡➡➡➡ 총회에 참석하여 임시총회를 주재하였으며,

위 ■■■■■이 같은 해 2. 5. 경상북도로부터 위탁받은 경상북도\$\$\$\$\$지원사 업에 대하여 같은 해 2. 8. 민간위탁금 교부신청 공문에 대표이사로서 결재, 의 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재단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같은 해 9. 27. 위 ■■■■■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그 결과 귀 재단 이사장은 공모 조건을 위반하여 이사장에 임용되었고 겸직

사항을 임명권자에게 승인받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의 대표이사를 겸직을 하고 있는 등 채용조건,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면서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① 일반적으로 직업은 상근 보수직을 뜻하는 것이며, ② 재단 「취업규칙」, 「복무규정」에 이사장은 겸직승인의 주체로 되어 있을 뿐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의 규율대상은 아니라는 점, ③ 성과계약서상 비영리업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④ 이사장은 재단 직원들보다 비영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비영리, 비상근, 무보수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리업무는 겸직승인대상이 맞지만 비영리업무는 겸직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겸직업무가 구체적으로 비상근·비영리인지 여부는 차후에 겸직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경상북도지사가 조사 및 검토하여 이사장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해야할 사안으로 겸직승인을 받아야 할 이사장 본인 스스로 겸직업무의 성격에 따라 겸직승인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 판단된다.

위 관서 지도·감독부서 ❖❖❖실에서도 해석의 모호함이 있으나 비영리업무라도 겸직승인을 받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며, 성과계약서 및 복무규정 등 겸직 관련 사항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통일화하여 변경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 ① 채용공고조건 및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즉시 감독부서(❖❖❖실)에 겸직 승인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시정)
- ②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당초 채용공고조건 등 취지대로 비영리업무를 겸직승인 대상에 명시적으로 반영, 성과계약서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이사장에게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장 경고” 처분 하오니 앞으로는 이사장 외 직무에 겸직 승인 없이 종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 등 인건비 인상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과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 체계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연도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연도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보완지침」에 따르면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 말 정원을 기준으로 2016년은 3.0%, 2017년은 3.5%, 2018년은 2.6% 범위(이하 “정부가이드라인 인상율”) 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유사 동종기관과의 현격한 인건비 격차(1인당 평균임금의 80% 미만¹⁾)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패널티를 적용하고, 다음연도 인건비 예산편성 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토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 내부자료 2015년 재단별 평균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위 관서 평균임금은 지역재단 평균 대비 88.2% 수준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015년 지역신용보증재단 평균임금 자료에 따르면 위 관서 평균임금은 지역재단 평균 대비 86.1% 수준이었고, 직원의 평균근속년수는 전남 5년에 이어 6.75년에 불과하여 타 시도 대비 평균근속

1) 2016년의 경우 70% 미만

년수가 두 번째로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유사 동종기관과의 현격한 인건비 격차가 없으므로 정부가이드라인 인상률을 초과하는 인건비 인상은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년 말 인건비 수준이 지역재단 평균 대비 88.2% 수준임을 인지하였는데도 위 규정을 무시한 채 향후 3년간(2016~2018) 정부가이드라인 인상률 이외에 11.8%를 추가 인상기로 하고 공식적인 보수규정 개정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아래 [표 1] 와 같이 최근 3년간 정부가이드라인 인상률 9.1% 이외에 10.3%를 추가 인상기로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였다.

이에 실지감사종료 후 질문서·답변서 등을 통해 실제 총인건비 인상률을 확인한 결과 실제 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3년간 34.37%가 인상되어 정부가이드라인 이외에도 25.27%가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최근 3년간 인건비 인상 현황

구분	인상계획			실제인상률 (승급분포함)	정부가이드라인 대비 초과인상률	비고
	정부 가이드라인	재단자체 추가인상	소 계			
	9.1%	10.3%	19.4%	34.37%	25.27%	
2016년	3.0%	3.9%	6.9%	14.06%	11.06%	
2017년	3.5%	2.0%	5.5%	9.42%	5.92%	
2018년	2.6%	4.4%	7.0%	10.89%	8.29%	

그 결과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채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8년 기준 6급 이상 임직원 48명 중 10명이 1억 원 이상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등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 되었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초과 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 또는 향후 인건비 동결 등을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단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감액금액 산출 시에는 감독부서가 매년 위 관서의 세출예산을 승인한 만큼 9.1%를 초과한 금액이 아닌 19.4%를 초과한 금액만큼 감액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관서 감독부서 ❖❖❖실에서도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공문 등 공식적인 협의는 없지만 이사회 개최 시 대면 협의를 한 점, 과도한 감액조치로 직원의 사기저하 등을 고려하여 위 관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액금액 산출을 요청하였

다.

[표 2] 2015년 말 기준 시·도 신용보증재단 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A)	직원수 (B)	평균 근속년수	1인당 평균임금 (A/B)	급여현황	
					기본급 (1+2+3)/B	실적급 (초과수당)
경 북	2,559,099	55	6.75	46,529	42,404	1,920
서 울	21,010,892	295	7.1	71,223	55,002	7,372
부 산	2,805,488	52	10	53,952	45,290	2,959
대 구	3,416,271	51	11.3	66,986	55,317	4,919
인 천	3,282,673	55	-	59,685	56,093	3,133
광 주	2,234,072	39	9.64	57,284	50,390	4,366
대 전	1,553,047	32	9.9	48,533	43,107	2,683
울 산	1,312,269	26	8	50,472	42,659	3,574
경 기	11,433,337	233	8.5	49,070	36,637	9,129
강 원	2,323,991	41	9.16	56,683	47,456	3,530
충 북	1,849,403	39	7.7	47,421	43,375	2,369
충 남	3,112,896	57	7.5	54,612	47,338	3,446
전 북	1,788,074	35	6.58	51,088	43,754	6,479
전 남	1,741,872	39	5	44,663	37,577	5,325
경 남	3,997,591	78	8.3	51,251	44,939	3,552
제 주	1,258,138	23	8	54,702	46,808	3,193
전 국 시 도 평 균			8	54,010	46,134	4,247
평 균 대 비			82.0%	86.1%	91.9%	45.2%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 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Ⅲ.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총인건비 규정에 따라 223,674천원을 감액 또는 향후 인건비 동결 조치하시기 바라며,

* 인건비 감액 금액 산출은 하위직원의 사기 등을 고려 위 관서 및 감독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19.4%를 초과한 14.97%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② 관련자에게는 「직원상벌규정」 제10조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최근 3년간 책임자급(4급 이상) 인건비 인상 현황

(단위 : 원)

연번	직급	성명	직급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5년대비 실수령액 기준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92,155,438	102,662,700	107,029,692	113,979,360	24%
2				94,407,600	102,441,460	111,654,810	119,437,330	27%
3				86,625,213	93,900,980	100,784,500	110,448,590	28%
4				82,495,226	94,020,830	101,179,760	112,254,240	36%
5				80,417,490	86,180,490	97,084,726	107,250,790	33%
6				75,625,940	85,026,550	92,454,910	100,855,810	33%
7				76,456,360	84,864,540	92,081,440	100,860,260	32%
8				74,386,039	81,677,070	88,272,670	101,219,260	36%
9				77,002,906	84,604,740	91,390,370	103,371,490	34%
10				62,798,560	79,208,157	85,092,610	96,822,030	54%
11				62,200,020	70,940,260	82,844,160	93,616,360	51%
12				62,154,480	70,692,850	81,089,560	89,793,440	44%
13				62,450,730	65,604,220	81,824,586	90,672,740	45%
14				57,944,310	66,104,230	68,963,490	74,899,090	29%
15				52,668,990	60,518,740	61,777,680	72,056,630	37%
16				48,225,300	53,575,310	61,780,220	69,708,240	45%
17				47,505,580	55,701,570	62,013,640	66,540,350	40%
18				42,735,240	53,008,750	63,349,740	69,779,700	63%
19				42,753,900	54,684,170	63,098,840	73,253,870	71%
20				43,188,270	49,463,890	57,449,796	66,971,780	55%
21				42,506,450	46,054,240	59,352,350	68,204,940	60%
22				42,839,800	49,170,390	55,502,730	67,427,410	57%
23				39,405,420	47,158,600	53,883,970	66,465,110	69%
24				42,787,780	48,221,840	54,212,510	64,355,120	50%
25				40,081,960	44,799,950	48,491,400	61,431,250	53%
26				40,622,880	44,499,070	49,987,080	62,024,620	53%
27				40,777,210	41,764,610	45,209,090	62,344,110	53%

*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급 등 모든 수당 포함

경 상 북 도

징 계 요 구

제 목	인건비 인상 부담 처리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징 계 대상자	♣♣♣♣부장 ○ ○ ○
징 계 종 류	경징계(감봉 이상)
내 용	

위 ○○○은 2015. 6. 26. 부터 2018. 1. 31. 까지 ♣♣♣♣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건비 인상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 보수규정 개정을 담당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과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 체계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연도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연도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르면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 말 정원을 기준으로 2016년은 3.0%, 2017년은 3.5%, 2018년은 2.6% 범위(이하 “정부가이드라인 인상률”) 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유사 동종기관과의 현격한 인건비 격차(1인당 평균임금의 80% 미만²⁾)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사람은 위 관서 내부자료 2015년 재단별 평균인건비 현황에 따라 2015년 말 기준 평균임금이 지역재단 평균 대비 88.2% 수준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사회 보수규정 개정(안)의 개정요지에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기재

2) 2016년의 경우 70% 미만

되어 있어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정부 가이드라인 인상률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유사 동종기관과의 현격한 인건비 격차가 2016년 인건비의 경우 70% 미만일 경우에만 인상률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15. 12. 경에는 몰랐고, 2016.(날짜 미상)에는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은 위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는 감액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했었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위 규정을 무시한 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줄여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토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6년 총인건비의 경우 정부가가이드라인 인상률 3.0% 이외에 11.06%가 추가 인상되었다.

더욱이 위 사람은 2016년 결산서 작성 등을 통해 2016년 인건비 인상률 효과가 11.06% 정도로 당초 향후 3년간에 걸쳐 추가 인상기로 한 수준(11.8%)만큼 인상 효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2017년과 2018년 인건비를 아래 [표]와 같이 인상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 실제 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3년간 34.37%가 인상되어 정부가가이드라인 이외에도 25.27%가 부당하게 인상되었다.

[표] 최근 3년간 인건비 인상 현황

구분	인상계획			실제인상율 (승급분포함)	정부가가이드라인 대비 초과인상율	비고
	정부 가이드라인	재단자체 추가인상	소 계			
	9.1%	10.3%	19.4%	34.37%	25.27%	
2016년	3.0%	3.9%	6.9%	14.06%	11.06%	
2017년	3.5%	2.0%	5.5%	9.42%	5.92%	
2018년	2.6%	4.4%	7.0%	10.89%	8.29%	

이에 위 사람은 문답과정에서 애당초 정부가가이드라인 인상률을 초과하는 재단자체 추가인상은 불가능한 점을 인정하였고, 2018년 기준 6급 이상 임직원 48명 중 10명이 1억 원 이상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등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직원상벌규정」 제9조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위 사람을 「직원상벌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징계(감봉 이상)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정원 및 보수협의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과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 체계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2017. 12. 27.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 후보자 협의 요청 시에는 공문으로 협의요청 및 협의 회신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최근 3년간 아래 [표 1, 2] 와 같이 보수규정 및 직제 규정을 개정하면서 경상북도와 제규정 개정에 대한 협의를 대면 또는 전자매일을 통한 이사회 서류 제출로 대신하여 공식적인 협의절차도 없이 이사회 심의·의결만 거쳐 보수 14.3%, 정원의 11%를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보수, 직제 등 규정 개정 시 감독부서와 전자매일, 대면 협의 후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당연직 이사로서 경상북도 ❖❖❖장이 임명되어 있어 경상북도와 협의 없이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1] 최근 3년간 보수 규정 개정 현황

구분	이사회결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지침
1	2016.12. 9.	- 지역재단 평균 급여 보전 및 급여인상(5.5%) - 직급별 최고호봉 변경(26~28호봉 → 30호봉)	3.5%
2	2017.12.26.	- 지역재단 평균 급여 보전 및 급여인상(7%)	2.6%
3	2018.12.	- 급여인상(1.8%)	1.8%

[표 2] 최근 3년간 직제 개정 현황

구분	2015. 3.13.	2015.12.23.	2017. 1. 1.	2018. 1. 1.	2019. 1. 1.
총 계	81	81	81	82	90
1급	2	2	2	2	2
2급	3	3	3	4	4
3급	8	8	8	8	9
4급	13	10	13	15	16
5, 6급	30	33	30	32	44
서무원	9	9	9	7	5
전담직원	-	-	-	-	1
계약직	16	16	16	14	9

그러나 규정협의회와 이사회 심의·의결절차는 근거법령도 다를 뿐만 아니라 별개의 절차인 점, 감사 후보자 요청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임원 임면 시 협의 형식과 절차를 공문서로 처리한 점, 위 관서에서 직제 및 보수규정 개정 시 감독 부서에 제출한 자료가 이사회 서류가 유일한 점을 검토할 때 정당한 협의를 거쳤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에 위 관서 감독부서인 ❖❖❖실에서는 관행적으로 규정 개정 시마다 이사회 개최 전 재단에서 방문 또는 전자메일로 이사회 회의 요약본 자료 등으로 협의를 대신하였고, 향후에는 보수 등 중요한 규정 개정 시에는 세부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공문 협의를 통해 적정한 규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 ① 앞으로는 규정 제·개정 시 대면협의, 전자메일 협의 등 공신력과 책임성이
결여된 협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 ② 관련자에게는 「직원상벌규정」 제10조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징 계 요 구

제 목	정원 및 보수협의 부담 처리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 ※ ※
징계 대상자	※ ※ ※장 ■ ■ ■
징 계 종 류	경징계(견책 이상)
내 용	

위 ■■■은 2015. 6. 26. 부터 2018. 7. 16. 까지 ♣♣♣♣본부 ※ ※ ※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원·보수·인사 등 규정 개정 시 지도·감독청인 경상북도와 협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과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 체계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제5조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고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6호, 2015.1.30.)에 따라 위 관서는 출연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한편 위 사람은 관서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2017. 12. 27.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 후보자 협의 요청 시에는 공문으로 협의 요청을 결재하고 협의회신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또한 위 사람은 위 법률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시 경상북도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아래 [표 1, 2] 와 같이 최근 3년간 보수규정 및 직제 규정 개정 시 경상북도에서 별도의 공문을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대면 또는 전자 메일을 통한 협의가 오랜 관례라는 사유로 위 법률과 중소벤처기업부 협의 형식과는

다르게 공문서 등 공식적인 협의절차도 없이 이사회 심의·의결만 거쳐 보수 및 정원 규정 등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표 1] 최근 3년간 보수 규정 개정 현황

구분	이사회회의결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지침
1	2016.12. 9.	- 지역재단 평균 급여 보전 및 급여인상(5.5%) - 직급별 최고호봉 변경(26~28호봉 → 30호봉)	3.5%
2	2017.12.26.	- 지역재단 평균 급여 보전 및 급여인상(7%)	2.6%
3	2018.12.	- 급여인상(1.8%)	1.8%

[표 2] 최근 3년간 직제 개정 현황

구분	2015. 3.13.	2015.12.23.	2017. 1. 1.	2018. 1. 1.	2019. 1. 1.
총 계	81	81	81	82	90
1급	2	2	2	2	2
2급	3	3	3	4	4
3급	8	8	8	8	9
4급	13	10	13	15	16
5, 6급	30	33	30	32	44
서무원	9	9	9	7	5
전담직원	-	-	-	-	1
계약직	16	16	16	14	9

그 결과 보수 및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감독부서의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등 객관적인 의견의 존재여부, 내용, 반영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되었고, 최근 3년간 인건비가 34.37% 과도하게 인상된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위 사람은 각종 규정의 협의에 대해 공문으로 협의 요청 후 회신을 받고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합당한 절차라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직원상벌규정」 제9조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위 사람을 「직원상벌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징계(견책 이상)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개 선 요 구

제 목	비상근감사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신용보증재단 「정관」 제12조에 따르면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상근임원실비지급규정」 제3조에 감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일에 대하여 이사회 참석의 경우 200,000원, 감사업무수행의 경우 3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비상근 감사제 추진 협조에 따르면 출연기관 경영 합리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비상근 외부감사제를 시행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현행 이사회 감사를 겸임하면서 비상근 형태로 근무하되 주 1~2일 근무와 연봉은 2000~3000만 원 정도로 운영토록 제규정 정비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4. 12. 30. 비상근 감사 직무수행 기준을 수립하면서 감사의 주요직무로 재단의 사업, 회계 및 업무전반 감사, 감사결과 보고, 준법 업무 및 민원업무 관련사항 등 사무를 부여하고 위 권고내용과는 다르게 주 3회(1회당 6시간)기준으로 근무조건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7. 12. 7. 비상근 감사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운 비상근 감사 공개모집을 통해 □□□을 같은 해 12. 29. 임명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이에 위 관서 비상근 감사의 적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 비상근 감사는 출근 일에 감사업무 수행일지 상 날짜와 주요업무 내용 란에 1줄로 직무수행내용을 기재할 뿐 전자결재권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위 사람은 1회당 6시간 근무기준조차도 최근 3개월간 10여 차례 조기 퇴근하는 등 근무조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16년과 2017년 아래 [표]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감사직무 수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출근 여부를 기준으로 고정된 급여성 수당을 지급하는 등 비상임 감사 도입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하고 있다.

[표] 비상근 감사 급여 지급 현황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지급액	비고
2016년	용역비	46,800,000	48,900,000	예산초과
2017년	용역비	46,800,000	50,400,000	"
2018년	지급수수료	46,800,000	46,200,000	
2019년	지급수수료	46,800,000	11,100,000	

이에 위 관서에서는 권고내용과 다르게 주3회 근무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재단의 총 보증잔액 1조 원, 정기감사 총 10회 이상 실시 등 금융거래 규모와 감사빈도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추가 자원의 투입을 통한 감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1회당 6시간 근무기준은 오전시간 4시간 동안 전일 금융거래 조사 뒤 오후시간 2시간 동안 결과보고가 이루어지는 평균시간이 감안된 것이라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 ① 귀 관서의 의견대로 비상근감사가 실질적인 내부통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근 감사제 운영을 개선하시고,(개선)
- ② 관련자에는 「임원인사운영규정」 제20조와 「직원상벌규정」 제10조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직 ✓급 승진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르면 승진은 상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직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채용, 승진, 이동의 방법에 의하여 보충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직제규정」(개정 26, 2018. 1. 1.) 제4조와 제20조에 따르면 일반직원은 1급 내지 6급으로 구분하고, 직급별로 1급 2명, 2급 4명, 3급 8명, 4급 15명, 5·6급 32명을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8. 6. 26. 일반직 *급 직원을 ✓급 책임자로 승진 임용을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서류를 작성, 제출하면서 아래〔표〕와 같이 ✓급 정원 15명 대비 현원이 13명이라 결원이 2명밖에 없는데도 정당한 승진 예정 인원 2명보다 1명 많은 3명을 승진 예정인원으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7. 2. ✓급 승진 근무연수에 도달한 *급 직원 3명이 모두 승진 임용되었고, 승진대상자로 결정될 수 없었던 일반직 *급 1명이 승진대상에 포함되는 등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는 정원을 초과하여 승진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징 계 요 구

제 목 ㉠㉠직 ✓급 승진 부당 처리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징계 대상자 ♣♣♣♣부장 ☒ ☒ ☒
징 계 종 류 경징계(견책 이상)
내 용

위 ☒☒☒은 2018. 2. 1.부터 ♣♣♣♣부 부부장으로 근무하다 2019. 2. 1.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현재까지 위 관서 ♣♣♣♣부에서 근무하면서 인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르면 승진은 상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직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채용, 승진, 이동의 방법에 의하여 보충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직제규정」(개정 26, 2018. 1. 1.) 제4조와 제20조에 따르면 일반직원은 1급 내지 6급으로 구분하고, 직급별로 1급 2명, 2급 4명, 3급 8명, 4급 15명, 5-6급 32명을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8. 6.경(날짜 미상) 일반직 *급 직원을 ✓급 책임자로 승진 임용을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서류를 작성하면서 결원이 2명밖에 없는데도 승진대상자 3명이 동기라는 사유로 3명을 모두 승진 예정인원으로 산정한 뒤 ♣♣♣♣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런 뒤 위 사람은 2018. 6. 26. 인사위원회 회의 당시 인사위원 *** 위원이 직급별 인원 현황을 보면 ✓급에 정원 대비 1명 과원으로 문제가 없냐는 질의에 2급에 1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된 답변을 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7. 2. ✓급 승진 근무연수에 도달한 *급 직원 3명이 모두 승진 임용 되었고, 승진대상자로 결정될 수 없었던 일반직 *급 1명이 승진대상에 포함되는 등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이에 위 사람은 1명은 승진에서 누락하고 정당한 승진예정인원은 2명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직원상벌규정」 제9조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위 사람을 「직원상벌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징계(견책 이상)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시험위원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위 관서 「인사규정」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외부관련 전문가를 2분의 1이상 참여시키고,

해당 직무분야와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재단 업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고, 이사장은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으로 해당 직무분야와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응시자를 평가하고, 위촉한 위원이 중복하여 심사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을 구성하며, 면접시험 등 시험은 시험위원이 채점표에 따라 평가하되 응시자별 채점표를 시험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관리하여 재단의 직원 채용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1. 시험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해당 직무분야와 시험출제에 관한 전문성)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8년 일반직 6급 직원채용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등을 별도로 위촉하지 않고,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된 인사위원회 위원 5명만으로 직원 채용 시마다 시험 위원으로 운영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인 시험위원 5명의 명단이 인사위원회 개최 등으로 사전에 노출되었음에도 별도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정당한 절차 없이 면접시험 등을 진행하였다.

[표]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성 명	임 기	소속 및 직위	경력분야	비 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인사위원 중복참여 및 평가항목별 일괄 평가

위 관서에서는 2단계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여한 위 [표]의 인사위원회 위원을 인사규정과는 다르게 재차 3단계 심층(임원)면접시험에 참여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위 관서 ♣♣♣♣본부장과 □□□□본부장은 2018. 10. 18. 2단계 면접시험과 같은 해 12. 26. 3단계 심층면접시험에서 채점표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배점(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고 평가항목을 일괄로 점수를 부여하여 제출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채용대행업체로부터 서류전형결과를 개인 전자메일로 제출

위 관서에서는 일반직 6급 채용을 위해 2018. 9. 19. ○○○○와 응시자의 인적성검사와 입사지원서에 대한 정성평가, 온라인 원서접수와 최종합격자 발표 시까지의 각 전형 별 합격자 발표 업무 등을 포함한 채용대행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에서 실시한 응시자별 인적성검사와 정성평가의 서류전형 결과를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받지 않고 ○○○○가 인사담당자에게 발급한 ID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에서 평가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같은 해 10. 10. ○○○○ ***과 ♣♣♣♣본부 인사담당자인 << 간 개인 메일로 제출받은 서류(서류전형 최종 결과)를 토대로 응시자 79명중 59명을 탈락시키고, 20명을 2단계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발하였다.

그 결과 재단 직원 채용시험의 평가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험위원에 의하여 평가되고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허술하게 작성되는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대구·경북 지역대학에 인사위원 위촉요청(유선 요청)을 하였으나 시간·거리제한 및 면접수당 등의 사유로 해당기관으로부터 거절통보를 받는 등 시험위원 인력풀을 구성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는 인사규정과 다르게 시험위원이 중복참여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채용서류 반환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미이행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1. 구직자에 대한 채용서류 반환 고지의무 위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제11조 제4항 및 제6항에는 반환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하고, 구인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직원채용을 공고할 때 채용서류 반환청구 절차를 공고문 등을 통하여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규정과는 다르게〔붙임〕과 같이 직원채용공고를 하면서 “채용관련 일체서류를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구직자의 청구권리를 부정하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고지의무를 21회에 걸쳐 이행하지 않았으며, 응시자 580명에게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하지 않고 있었다.

2.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미이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에 따르면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2016. 1. 19.부터 2019. 2. 20.까지 직원채용공고 기간 중 580명으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관련서류(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접수한 채용관련 서류를 파기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규정과는 다르게 채용절차가 종료되어 불필요한 관련서류 1,160건 정도를 기록물 문서와 함께 편철하고 보관하고 있는 등 응시자(불합격자)가 제출한 관련서류가 개인정보보호법 절차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는 구직자에 대한 채용서류 반환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합격자 결정 이후에 개인정보 파기를 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붙임]

채용절차 공정성 관련 채용서류의 반환고지 등 절차위반 현황

구분	채용공고 부문	인원수		공고일자
		응시인원	합격인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피복비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경북신용보증재단 「복지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직원에 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 II. 주요 항목별 집행 지침에 따르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 집행하고 경비원, 청소원 등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여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며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복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로 회계부서에서 일괄 구매하여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급했어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규정과는 다르게 2016년부터 매년 직원 개인별로 불특정 평상복을 개별 구입하고 구입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붙임〕 피복비 지급현황과 같이 3년 동안 피복비로 총 232명에게 총 69,460천원을 개인별로 지급하였다.

더욱이 위 관서에서는 2016년 경상북도 종합감사 시 상기내용(피복비 지급 부적정)과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지적 받고서도 이를 개선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복비를 개인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는 피복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불 입]

최근 3년간 피복비 지급 현황

연번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		-	-	300,000	300,000
2		300,000	300,000	300,000	900,000
3		300,000	300,000	300,000	900,000
4		300,000	300,000	300,000	900,000
5		286,000	300,000	300,000	886,000
6		300,000	300,000	300,000	900,000
7		300,000	300,000	300,000	900,000
8		300,000	300,000	300,000	900,000
9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0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1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2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3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4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5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6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7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8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9		300,000	300,000	300,000	900,000
20		290,000	300,000	300,000	890,000
21		300,000	300,000	300,000	900,000
22		300,000	300,000	300,000	900,000
23		300,000	300,000	300,000	900,000
24		300,000	300,000	300,000	900,000
25		300,000	300,000	300,000	900,000
26		300,000	300,000	300,000	900,000
27		300,000	300,000	300,000	900,000
28		300,000	300,000	300,000	900,000
29		300,000	300,000	300,000	900,000
30		300,000	300,000	300,000	900,000
31		300,000	295,920	300,000	895,920
32		299,000	300,000	300,000	899,000
33		300,000	300,000	300,000	900,000
34		300,000	300,000	300,000	900,000
35		300,000	300,000	300,000	900,000
36		299,000	300,000	300,000	899,000
37		300,000	300,000	300,000	900,000
38		300,000	300,000	300,000	900,000
39		300,000	300,000	300,000	900,000
40		300,000	300,000	300,000	900,000
41		300,000	300,000	300,000	900,000
42		300,000	300,000	300,000	900,000
43		300,000	300,000	299,000	899,000
44		300,000	300,000	300,000	900,000
45		300,000	300,000	300,000	900,000
46		300,000	300,000	300,000	900,000
47		300,000	-	300,000	600,000
48		300,000	300,000	300,000	900,000
49		298,800	300,000	300,000	898,800

50		300,000	300,000	300,000	900,000
51		282,800	298,000	300,000	880,800
52		–	300,000	300,000	600,000
53		–	268,000	300,000	568,000
54		300,000	300,000	300,000	900,000
55		300,000	300,000	300,000	900,000
56		300,000	300,000	300,000	900,000
57		300,000	300,000	300,000	900,000
58		300,000	300,000	300,000	900,000
59		300,000	300,000	300,000	900,000
60		300,000	299,400	300,000	899,400
61		300,000	300,000	300,000	900,000
62		300,000	300,000	300,000	900,000
63		300,000	300,000	300,000	900,000
64		300,000	300,000	300,000	900,000
65		300,000	300,000	300,000	900,000
66		300,000	300,000	300,000	900,000
67		300,000	300,000	300,000	900,000
68		–	300,000	300,000	600,000
69		–	–	300,000	300,000
70		–	300,000	300,000	600,000
71		–	300,000	300,000	600,000
72		–	300,000	300,000	600,000
73		–	–	300,000	300,000
74		–	–	283,800	283,800
75		–	300,000	274,800	574,800
76		–	300,000	300,000	600,000
77		300,000	–	–	300,000
78		300,000	–	–	300,000
79		300,000	–	–	300,000
80		300,000	–	–	300,000
81		299,000	–	–	299,000
82		300,000	–	–	300,000
83		300,000	–	–	300,000
84		300,000	–	–	300,000
85		300,000	–	–	300,000
86		300,000	300,000	–	600,000
87		–	287,900	–	287,900
88		–	300,000	–	300,000
89		–	300,000	–	300,000
90		300,000	–	–	300,000
91		300,000	300,000	–	600,000
92		300,000	300,000	–	600,000
93		299,000	300,000	–	599,000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성과급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수규정」 제34조에 따르면 경영성과 평가급은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급대상은 평가 대상년도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고,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결과」(경상북도, 2017. 9.)에 따르면 임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의 지급대상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으로 연봉(보수) 월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연봉(보수)는 평가대상연도인 2016년도 기준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총액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최고-최저 등급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7. 9. 5.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2016년 경영평가 결과를 통지 받고 아래 [표] 와 같이 정당한 최고 등급(S등급) 인원은 12명 보다 1명 많은 13명으로, 정당한 최저 등급(B등급) 인원은 7명 보다 1명 적은 6명으로 인원 비율을 산정한 뒤 같은 해 9. 21. 성과급 126,550천 원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최고등급은 1명 더 많이, 최저등급은 1명 더 적게 성과급이 지급되어 그만큼 성과급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표] 직급별 월평균 인건비 인상을

구 분	총원	S	A	B	C
		12.4명 이내			6.2명 이상
실제비율 산정 인원	62	13	19	23	6
정당한 비율 산정 인원	62	12	19	23	7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는 등급별 인원비율을 위반하여 성과급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징 계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당 처리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징 계 대 상 자	♠ ♠ ♠
징 계 종 류	경징계(견책 이상)
내 용	

위 ♠♠♠은 2016. 2.부터 2018. 1.까지 ♣♣♣♣본부 ♣♣♣♣부에서 성과급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복비 지급에 관한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복지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직원에 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 II. 주요 항목별 집행 지침에 따르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 집행하고 경비원, 청소원 등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여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며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복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로 회계부서에서 일괄 구매하여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급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위 규정 숙지 등을 태만히 한 채 직원 개인별로 불특정 평상복을 개별 구입하고 구입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16년에는 ♣♣♣ 등 78명에게 286천 원~300천 원, 2017년에는 ♣♣♣ 등 78명에게 287천 원

~300천 원을 개인별로 지급하였다.

2.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결과」(경상북도, 2017. 9.)에 따르면 임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의 지급대상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으로 연봉(보수) 월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연봉(보수)는 평가대상연도인 2016년도 기준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총액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최고-최저 등급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7. 9. 5.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2016년 경영평가 결과를 통지 받고 정당한 최고 등급(S등급) 인원은 12명 보다 1명 많은 13명으로, 정당한 최저 등급(B등급) 인원은 7명 보다 1명 적은 6명으로 인원 비율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최고등급은 1명 더 많이, 최저등급은 1명 더 적게 성과급이 지급되어 그만큼 성과급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직원상벌규정」 제9조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위 사람을 「직원상벌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징계(견책 이상)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의요구 및 통보, 기관 경고

제 목 보증료 환급업무 처리 지연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기업지원본부 보증사업부
내 용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 후 보증료 납부기일 내에 보증채무가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 익일 이후의 보증료를 환급하고 즉시 환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하고 차기 보증료 수납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복무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직원은 규정 및 제규칙을 준수하고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귀 재단에서는 보증료 납부기일 내에 보증채무가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 이후 즉시 현금지급 및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증료 환급 반환업무를 처리했어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2. 10. 5. □□시 소재 ⅡⅡⅡ 치킨이 보증채무가 해지되었는데도 보증료 225,040원을 환급하지 않는 등 보증채무가 해지된 총 4,980건 699,664,730원의 환급대상 보증료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더욱이 위 내용으로 감사에 지적된 이후 업무량 과다, 환급대상자 연락처 등이 상이해서 보증료 환급이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2일 만에 2,090건 344,694,250원의 미환급 보증료를 환급 처리하였다.

[표] 미환급 보증료 내역

기 준 일	미환급 건수	미환급 금액	비 고
2019. 4. 2.	4,980건	699,664,730원	
2019. 4. 4.	2,890건	354,970,480원	

* 경북신용보증재단 자료제출 시점에 따른 재구성

그 결과 즉시 환급되어야 할 보증료 등이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연초 정책자금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경상북도 육성자금 등의 신규배정에 따른 업무과다와 보증서 심사 및 발급이 우선되어 업무의 우선순위 상 적극적으로 해지처리를 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향후 환급기한과 관련한 표준업무처리지침 운용을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 ① 앞으로는 즉시 환급되어야 할 보증료가 지연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주의)
- ② 보증료 환급에 관한 소상공인 등 도민 불편이 없도록 환급절차, 시기 등을 포함한 표준업무처리 지침을 제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통보)
- ③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하오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시·군 및 금융기관 특례보증배수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경북신용보증재단 「정관」 제27조에 따르면 재단의 신용보증의 총액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4. 3. 26.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는 출연부 협약보증이 보증비율을 확대하여 협약보증 이외의 일반보증 보다 리스크가 높은 바, 재단 보증운영의 건전성을 고려, 보증공급금액을 출연금액의 12배로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18. 12. 31. 기준 연간사고발생률이 6.7%로 16개 시·도 보증재단 중에서 제일 높고, 연간순사고발생률 또한 4.12%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아래 [표 1] 와 같이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발생액 또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표 1] 보증사고 및 사고발생 등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보증잔액	7,584	8,797	9,294	9,915	10,520
사고발생액*	472	424	526	627	705
사고정상화액**	207	148	185	248	272
대위변제발생액***	230	274	334	381	411
구상채권회수액****	85	102	112	121	128

* 신용보증 지원한 기업이 연체가 발생하여 보증부실 사유가 발생한 금액

** 재단의 자체 노력에 의해 기업의 연체가 정리된 금액

*** 연체가 장기화 되어 상황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 재단이 금융회사에 대신 변제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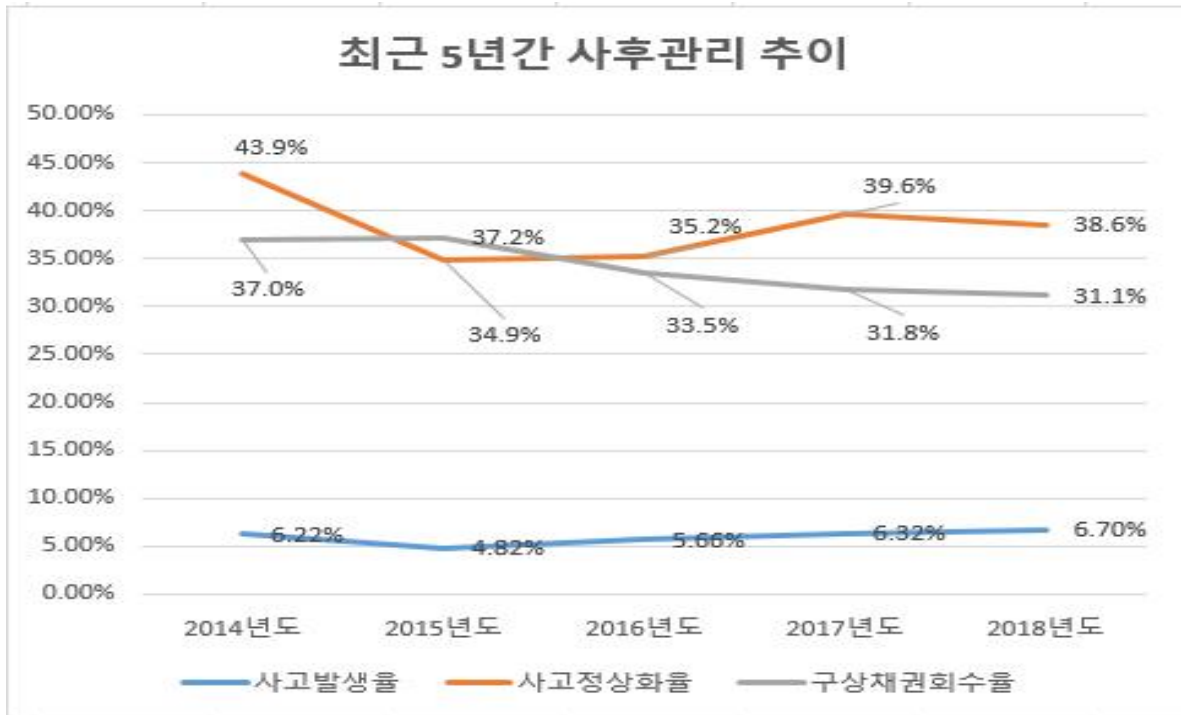
**** 대위변제 된 기업을 대상으로 재단의 자체 노력에 의해 기업으로부터 회수한 금액

또한 최근 5년간 경향을 살펴보면 아래 [표 2] 및 [그림] 과 같이 사고발생률은 증가, 사고 정상화율은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8년 다시 감소되고 있고, 구상채권회수율은 감소추세에 있다.

[표 2] 최근 5년간 사고발생 및 정상화, 구상채권회수 현황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사고발생률	6.22%	4.82%	5.66%	6.32%	6.70%
사고정상화률	43.9%	34.9%	35.2%	39.6%	38.6%
구상채권회수률	37.0%	37.2%	33.5%	31.8%	31.1%

[그림] 최근 5년간 사고발생 및 정상화, 구상채권회수 현황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신용 위험이 높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줄여 보증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 3] 와 같이 2017. 7. 13. 시행한 ♡♣과의 협약보증 시 당초 협약보증한도 150억 원을 4.8억 원 초과하여 총 154.8억 원의 보증사업을 시행하는 등 보증배수를 초과하여 보증공급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표 3] 최근 3년간 보증배수를 초과한 보증공급액 현황

구분	출연금 (D)	배수	목표 (공급)	시행일	종료일	보증 공급액 (A)	보증사고 현황				
							보증사고		대위변제		잔액 (D-C)
							금액 (B)	사고율 (B/A)	금액 (C)	대위 변제율 (C/A)	
◆은행	200	12	2,400	2016. 8.11.	2017. 5. 8.	2,644	324	12.25%	164	6.2%	36
♀♀은행	1,000	15	15,000	2017. 7.13.	2017.10.13.	15,482	248	1.6%	96	0.62%	904

또한 2016년 □□시, ■■군, ♀♀은행의 경우 대위변제율이 14.85%, 8.8%, 9%로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금액이 특례보증재원 출연금을 초과하여 재정 손실을 보았다.

[표 4] 최근 3년간 특례보증 중 손실 현황

구분	출연금 (D)	배수	목표 (공급)	시행일	종료일	보증 공급액 (A)	보증사고 현황				
							보증사고		대위변제		잔액 (D-C)
							금액 (B)	사고율 (B/A)	금액 (C)	대위 변제율 (C/A)	
㉠㉡시	700	10	7,000	'16. 3.31	'17. 1.27.	7,000	1,421	20.30%	801	11.44%	-101
□□시	400	10	4,000	'16. 2.22.	'16.10.29.	4,000	957.65	23.94%	594	14.85%	-194
■■군	50	15	750	'16. 3.16	'17. 6. 7.	750	135	18.00%	66	8.80%	-16
♀♀은행	1,000	15	15,000	'16. 3.29.	'17. 2.13.	15,013	3,577	23.83%	1,351	9.00%	-351
㉠㉡은행	500	15	7,500	'16. 3.29.	'17. 2.13.	7,539	1150	15.25%	610	8.09%	-110

* ㉠㉡시, ㉠㉡은행의 경우 대위변제 채권 중 회수금액으로 잔액은 각각 13백만원, 35백만원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 ① 보증대상 및 사고율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증운용배수 적용으로 위한 내부 지침을 수립·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통보)
- ② 앞으로는 보증배수를 초과하여 보증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 및 규정 불합리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귀 재단 「여비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국외여비는 “별표 5” 내지 “별표 7” 과 제2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운임, 체재비, 준비금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하되, 해외선진지 금융체험 연수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 최고 200만 원의 한도로 연수비를 재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여비는 재경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외환 사용에 관한 특별허가 또는 제한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지급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외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형평에 맞게 국외여비를 지급했어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붙임〕해외연수 국외여비 지급내역과 같이 ☺☺☺☺부 직원 등 2명이 2018. 11. 19.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 『』에 2018 하반기 직원 해외 연수 시 국외여비를 지급하면서 재단규정에 의한 여비산정 금액(1,636,400원)이 주관기관인 ☺☺재단에서 책정된 여비금액(2,214,800원)보다 578,400원이 적어 위 규정 제22조 제3항을 근거로 주관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등 5회는 자부담이 없도록 국외여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였다.

반면 이사장이 2018. 11. 22.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에 제31차 ### 대표단 회의 참석 시 국외여비를 지급하면서도 재단규정에 의한 여비산정 금액(5,858,720원)이 주관기관인 ☺☺재단에서 책정된 여비금액(5,500,000원)보다

358,720원이 많아 같은 규정을 근거로 주관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등 3회는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전 이사장 등 12명이 2017. 11. 10.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에 ㊦㊦ 참관시 국외여비를 지급하면서 여행사와 계약한 금액(1,635,000원)은 감안하지 아니하고 재단규정 금액을 적용 360,580원에서 1,486,160원 증액하여 지급하였다.

역시 ㉠㉠지점 지점장 등 2명이 2017. 3. 16.부터 같은 해 3. 24.까지 **, ㉠㉠㉠㉠에 2017 **** 해외연수 선진 시책 비교연수 시에는 ****에서 여행사와 계약한 금액(4,363,300원)은 감안하지 아니하고 재단 규정금액을 적용하여 604,920원과 1,028,540원을 증액하여 지급하는 등 4회는 증액하여 지급하였다.

그 결과 해외연수 시 지급되는 국외여비가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급하여 국외 연수자에게 지급된 국외여비가 형평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국외여비 지급 시 이사장이 임의로 증감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외여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불 임]

해외연수 국외여비 지급내역

(단위 : 원)

연 수 자			연수일자	연수국가	연수목적	국외여비 지급내역			비 고 (차액)
소 속	직 급	성 명				재단규정 금액	주관기관 책정금액	실 제 지급금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1,636,400	2,214,800	2,214,800	578,400
						〃	〃	〃	〃
						5,858,720	5,500,000	5,500,000	삭 감
						4,061,680	4,836,000	4,836,000	774,320
						〃	〃	〃	〃
						3,629,000	3,629,000	3,629,000	-
						4,893,480	4,880,000	4,880,000	삭 감
						3,121,160	1,635,000	3,121,160	증 액 지 급
						2,438,990		2,438,990	
						2,200,230		2,200,230	
						1,995,580		1,995,580	
						2,200,230		2,200,230	
						1,995,580		1,995,580	
						〃		〃	
						〃		〃	
						〃		〃	
						〃		〃	
						〃		〃	
						〃		〃	
						12,463,515	12,424,665	12,500,000	증 액 지 급
						4,996,480	4,851,667	4,850,000	삭 감
						〃	〃	〃	〃
						5,391,840	4,363,300	5,391,840	증 액 지 급
						4,968,220	〃	4,968,220	〃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경북신용보증재단 「업무용차량관리기준」제6조에 따르면 차량은 임직원의 업무수행, 업무출장 및 기타 대·내외 공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임직원 행동강령」제20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재단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 임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및 공무수행 이외에는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는 2016. 4. 1.부터 2018. 1. 14.까지 ➡➡회, 이사장 ○○는 2018. 1. 29.부터 2019. 3. 31.까지 ➤➤회 각각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을 위하여 개인적 용무로 이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는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및 공무수행 이외에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등을 구매할 경우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 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도록 되어있고,

[별표 1]의 7호 및 8호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등은 가능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서 축의·부의금품은 결혼 또는 사망으로 한정하여 소속 상근직원과 관할구역 내 업무유관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붙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재단의 주요거래처에 제공할 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고 물품수불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재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의 장 등에게 화환 및 축의·부의금을 하거나 화환과 축의·부의금을 중복지급, 재단 소속직원 자녀출산에 따른 축하화환을 하는 등 총 **건 4,846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